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임실군의회 의장



##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1항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안 제3조)

라. 후생복지제도의 운영방법(안 제4조~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심사예고 : 5일

라. 비용추계: 비대상

####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임실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주소: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이도리), 우편번호: 55927, 전화: 063)640-2883, FAX: 063)640-2169, E-mail: jh03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력증진을 위해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필요시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

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 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문화시찰
2. 정년, 명예퇴직 소속공무원 및 순직 소속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원
3. 소속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5.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 연

수 지원

6. 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과 그 부모에 대한 문화시찰

7.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

**제8조(통합 운영)** 의장은 임실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7조 후생 복지사업의 시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황일권의원**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